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9729호, 2023. 9. 14. 공포, 2024. 3. 15. 시행)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법 제2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유통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(안 제9조의21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. 00. ~ 0. 0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1(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)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조사(이하 “유통실태조사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온누리상품권 구매자, 사용자, 사용처의 현황
 2. 온누리상품권의 발행, 판매, 환전 현황
 3.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환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통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1. 조사의 목적, 성격, 내용, 방식등에 관한 사항
 2. 조사기획,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1(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) ① 중소기업부 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조사(이하 “유통 실태조사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온누리상품권 구매자, 사용자, 사용처의 현황</u> <u>2. 온누리상품권의 발행, 판매, 환전 현황</u> <u>3.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환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</u> <u>② 중소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통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</u> <u>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</u> <u>1. 조사의 목적, 성격, 내용, 방식 등에 관한 사항</u> <u>2. 조사기획,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</u> <u>3.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822